www.kead.or.kr
www.esingo.or.kr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가
실려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사업주 신고안내서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CONTENTS

PART 1
주요 용어 설명 및 신고방법

Ⅰ. 주요 용어 설명 ······ 3
Ⅱ.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전자신고 방법 ······ 7
Ⅲ. 주요 Q&A 및 유의사항 ······ 24

PART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29

PART 3
장애인고용부담금

Ⅰ.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 ······ 35
Ⅱ.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 35
Ⅲ.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절차 등 ······ 40
Ⅳ.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금액 산정방법 ······ 43
Ⅴ. 주요 Q&A 및 유의사항 ······ 46

CONTENTS

PART 4
장애인고용장려금

Ⅰ.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요 ······················ 51

Ⅱ.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51

Ⅲ.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부정수급 및 부정신청 ······································ 53

Ⅳ.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방법 ················ 56

Ⅴ. 최저임금제도 안내 ······························ 60

Ⅵ.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 61

Ⅶ. 주요 Q&A 및 유의사항 ····················· 72

별 첨

〈별첨 1〉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서식 ························· 73

〈별첨 2〉 고용부담금·장려금·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연계고용감면 통합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신고서 ··········· 76

〈별첨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6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 77

〈별첨 4〉 2018년도 공공기관 현황 ·········· 78

〈별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 94

PART 1

주요 용어 설명 및 신고방법

※ 안 내 사 항

□ `16.12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였으며,

**`20년부터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어, 고용의무 미이행 시 `20년분에 대하여 `21년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 (`17→`19) 민간기업 2.9% → **3.1%,** 공공부문 3.2% → **3.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Ⅰ. 주요 용어 설명

①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주요 용어 설명

장 애 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등급 및 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주에 고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우선순위)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등급 및 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 로 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법인의 등기이사 등 경영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 업 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 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의무고용 사업주

- 비영리법인, 비영리·비수익단체, 종교단체 및 업종 등과 관계없이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소정근로일과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무급휴일, 무급휴가,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중증장애인 수만큼 고용한 것으로 인정)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제출대상사업주

-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6월) 실시상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대상 사업주	-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고용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고용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주체	-「국가공무원법」 제6조 및「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출연기관

②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사업별	신고서식	첨부서류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1월 31일까지 제출: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출)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7월 31일까지 제출: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최초 신청·신고 이후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고용부담금 신고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1월 31일까지 제출: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출) ※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연도 2월말일까지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란? <u>사업주가 1월31일까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실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2월말까지** 오류사항을 스스로 정정할 기회 부여하고, 수정신고기한 내 오류를 정정한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50으로 감면**</u>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최초 신청·신고 이후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고용장려금 신청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분기별 신청)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Ⅱ.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전자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절차

○ 전자신고는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서 합니다.

“e신고서비스” 접속
www.esingo.or.kr

↓

사업체(사업장) 및 신고담당자 정보등록

↓

장애인명부 및 임금대장 등록

↓

상시근로자 등록 및 첨부서류 파일 등록

↓

장애인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신고내역 등록

↓

장애인고용계획,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신고내용(금액 등) 확인

↓

신고내역조회 후 신고 전 출력물

↓

장애인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전자신고 완료

↓

전자신고 완료 출력물

②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전자신고 따라하기

1.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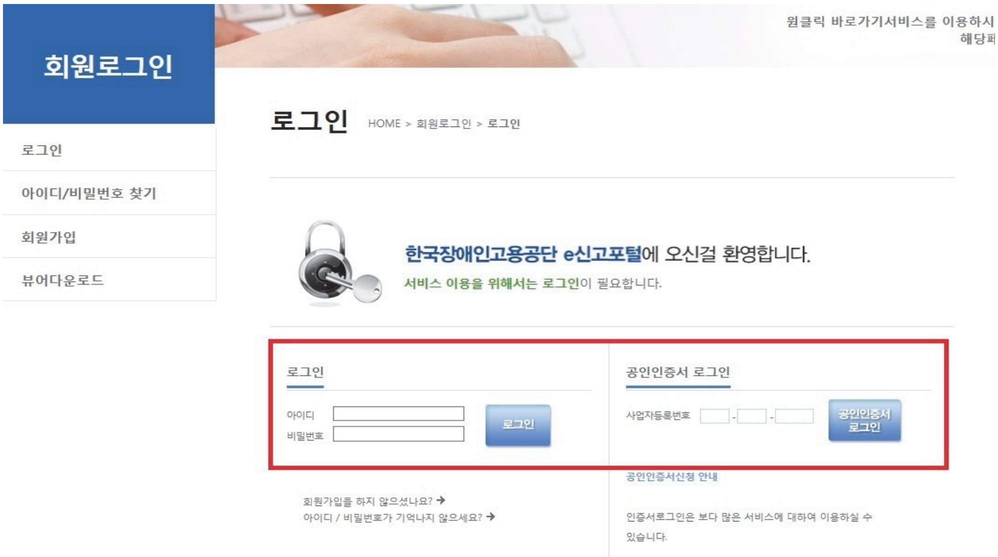

2. 비회원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인인증 절차없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만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주(민간 및 공공기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사업장이 아닌 **'본사'로 등록**되어야만 전자신고서비스(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신고, 고용장려금 신청)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e신고서비스(wwww.esingo.or.kr)에서 사업주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대상 업무를 선택합니다.

사업주 유형 및 신고내역 선택

☞ 사업주 유형 선택

- 민간 사업주: '민간사업주'를 선택합니다.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공사)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을 선택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자치단체 안내' 선택합니다.

☞ 신고할 내역 선택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전자신고에 들어갑니다.

신고 연도 및 분기 선택

고용계획서/부담금/장려금 신고(청)

- 해당 기준년도(기준년도 2018)를 선택
- 전자신청하기(전자 신고하기) 선택

5. 공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공인인증 절차

① 공인인증서는 기업용인증서(법인), 개인인증서(개인사업주)
- 기업용 및 대표자 개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 소속직원이 보유한 인증서도 가능하나, 먼저 공단에 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6. 사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체 정보 입력

① 사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사(본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담당자 정보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에 체크합니다.

7. 장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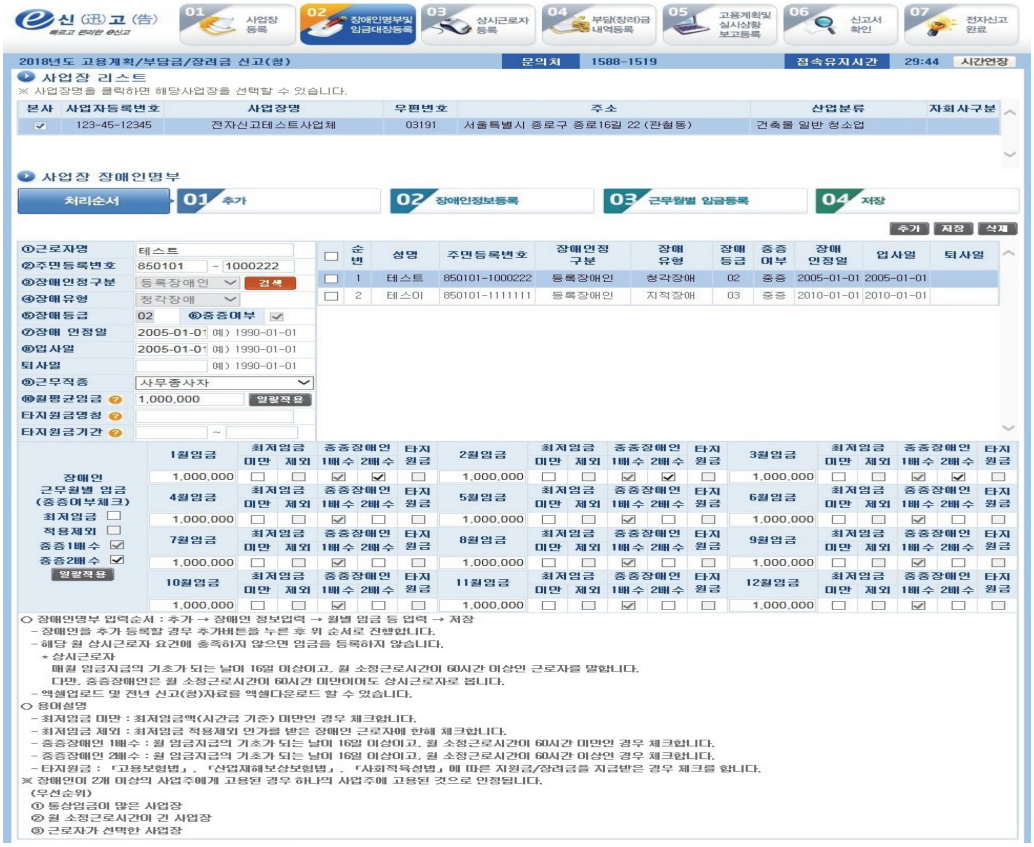

장애인 정보 입력

★ 처리순서: 추가 → 장애인정보등록 → 근무월별 임금등록 → 저장

① 장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추가(추가)을 선택하고 장애인 근로자 개인정보를 입력

② 근무월별 임금을 등록합니다.

- 화면 하단에 최저, 제외인가, 1배수, 2배수, 타지원금을 숙지하고 해당 값 입력
-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저장) 선택

* 다른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추가)버튼을 클릭하고 ①~② 과정을 진행합니다.

* 해당 월 상시근로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임금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 엑셀업로드 및 전년도 신고자료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주에 고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우선순위)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8. 월별 근로자 현황을 입력합니다.

월별	전체 근로자수	적용제외 근로자수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인원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고용월)				
						전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 (60시간 미만)		계	1/4 미달	1/4~1/2 미달	1/2~3/4 미달	3/4 이상
1	100	0	100	2	3	2	0	2	0	0	0	0	0	0	0
2	105	0	105	3	4	2	0	2	0	0	0	0	0	0	0
3	102	0	102	2	3	2	0	2	0	0	0	0	0	0	0
4	100	0	100	2	3	1	0	0	1	0	1	0	0	0	1
5	97	0	97	2	3	1	0	0	1	0	1	0	0	0	1
6	100	0	100	2	3	1	0	0	1	0	1	0	0	0	1
7	120	0	120	3	4	1	0	0	1	0	2	0	0	2	0
8	115	0	115	3	4	1	0	0	1	0	2	0	0	2	0
9	120	0	120	3	4	1	0	0	1	0	2	0	0	2	0
10	117	0	117	3	4	1	0	0	1	0	2	0	0	2	0
11	115	0	115	3	4	1	0	0	1	0	2	0	0	2	0
12	118	0	118	3	4	1	0	0	1	0	2	0	0	2	0
합계	1309	0	1309	31	43	15	0	6	9	0	15	0	0	12	3

월별 근로자 현황 입력

① 월별 전체근로자 및 적용제외근로자를 입력합니다.

- 전체근로자: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모든 인원(일용직 등 포함)을 기재합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근로자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은 예외) 근로자를 적습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수는 자동 계산됩니다.

②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첨부서류를 업로드(35Mb 이상 업로드 불가)합니다.
- 첨부서류는 압축하여 업로드 가능하며, 업로드를 못한 경우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월별로 산정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e신고 빠르고 편리한 e신고

01 사업장 등록 | 02 장애인명부및 임금대장등록 | 03 상시근로자 등록 | 04 부담(장려)금 내역등록 | 05 고용계획및 실시상황 보고등록 | 06 신고서 확인 | 07 전자신고 완료

2018년도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신고(청) | 문의처 1588-1519 | 접속유지시간 29:59 시간연장

(2018)년도 장애인고용실시상황보고 및 고용장려금(고용부담금) 산정내역

월별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인원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고용월)					장려금 제외인원	장려금 지급인원	계산금액 (+)부담금 (-)장려금
				전체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60시간 이상)	중증 장애인 (60시간 미만)		계	1/4 미달	1/4~1/2 미달	1/2~3/4 미달	3/4 이상			
1	100	2	3	2	0	2	0	0	0	0	0	0	0	0	0	0
2	105	3	4	2	0	2	0	0	0	0	0	0	0	0	0	0
3	102	2	3	2	0	2	0	0	0	0	0	0	0	0	0	0
4	100	2	3	1	0	0	1	0	1	0	0	0	1	0	0	945,000
5	97	2	3	1	0	0	1	0	1	0	0	0	1	0	0	945,000
6	100	2	3	1	0	0	1	0	1	0	0	0	1	0	0	945,000
7	120	3	4	1	0	0	1	0	2	0	0	2	0	0	0	2,003,400
8	115	3	4	1	0	0	1	0	2	0	0	2	0	0	0	2,003,400
9	120	3	4	1	0	0	1	0	2	0	0	2	0	0	0	2,003,400
10	117	3	4	1	0	0	1	0	2	0	0	2	0	0	0	2,003,400
11	115	3	4	1	0	0	1	0	2	0	0	2	0	0	0	2,003,400
12	118	3	4	1	0	0	1	0	2	0	0	2	0	0	0	2,003,400
합계	1309	31	43	15	0	6	9	0	15	0	0	12	3	0	0	14,855,400

고용부담금 산정설명

1. 미달고용인원 =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중증 2배수 반영)
2. 2배수 인정 장애인근로자 :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이면서 월 소정근로 시간 60시간이상인 중증근로자는 2배수 인정
3. 미달고용인원 1명당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장애인 비율	'18년 부담기초액('19년 신고·납부)
3/4이상인 경우	945,000원
1/2이상 3/4미만인 경우	1,001,700원
1/4이상 1/2미만인 경우	1,134,000원
1/4미만인 경우	1,323,000원
장애인이 없는 경우	1,573,770원

4. 월 고용부담금액 = 해당 월 미달고용인원 X 해당 부담기초액

고용장려금 산정설명

1. 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 근로자수 - 장려금 제외인원 - 장려금 기준인원
2. 장려금 제외인원: 최저임금미만자, 6급장애인 중 입사일로부터 만 4년 경과자,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자
3. 장려금 지급단가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17년 까지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2018년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 발생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 6급 장애인은 '18년 발생분부터 한시지원 폐지

이전 | 다음

산정내역 확인

① 입력한 내용에 대한 계산된 인원수를 확인 합니다.

② 계산금액을 확인합니다.

- (+)인 경우 고용부담금입니다.
- (-)인 경우 고용장려금입니다.

10. 고용계획서/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신고(청) 보고서 선택

① 신고(청)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 (전체근로자 40인 이상 사업체)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가 자동 선택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체근로자 97인 이상 사업체) 고용부담금(부담금 0원 발생포함) 신고서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가 자동 선택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가 100인 미만인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 사업체) 고용장려금 신청서가 자동 선택됩니다.
  * 2018년 전체근로자 40인 이상 고용장려금 사업체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고용장려금 신청서가 자동 선택됩니다.
  * 2018년 전체근로자 97인 이상인 사업체 중 최종적으로 고용장려금 연도 중 하나 이상의 분기에서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고용부담금 신고서도 자동 선택 됩니다.

② 고용장려금 신청할 분기를 선택합니다.

- 고용장려금이 발생함에도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안함 을 선택합니다.
  * 장려금 미신청 사업체 중 전체근로자 97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부담금 신고서(부담금 0원)가 자동 선택됩니다.

11. 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신고(청)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입력합니다.

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산출내역 확인 및 추가사항 입력

① 고용부담금 산출내역을 확인합니다.
- 고용부담금 납부방법 선택: 일시납부(◯ 일시납부), 분할납부(◯ 분할납부)
-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승인액을(**연계고용감면액**) 기재합니다.

② 고용장려금 지급 받을 은행계좌를 입력합니다.
- 계좌실명번호: 개인사업주는 주민번호, 법인사업주는 사업자등록번호, 의제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연계고용 감면승인액
- 연계고용 대상 사업주는 2019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고용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전자신청, 직접방문, 우편제출 하셔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12. 금년도 고용계획을 입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률
		합계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118	3	1	0	1	0	0.85 %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2	4	※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이 존재하는 경우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예정직무	전체고용 예정인원 (장애인 포함)	장애인 고용예정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고용방법
		인원수 (명)	시기	경증남성 (명)	경증여성 (명)	중증남성 (명)	중증여성 (명)	
합계	20	12	일괄적용	4	5	1	2	일괄적용
관리자	0	0		0	0	0	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	0		0	0	0	0	
사무종사자	10	5	1/4,4/4분기	2	0	1	2	1
서비스종사자	0	0		0	0	0	0	
판매종사자	0	0		0	0	0	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	2	1/4,2/4,3/4분기	0	2	0	0	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	0		0	0	0	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	0		0	0	0	0	
단순노무종사자	7	5	1/4,2/4,3/4,4/4분기	2	3	0	0	4

고용계획서 등록

①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이 있는 경우 미이행 사유를 입력합니다.
  * 전년도 12월 고용현황은 자동계산됨

② 금년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입력합니다.

- 고용예정직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중 해당 번호를 표시합니다(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 장애인고용예정: '**인원수**'란은 금년도 채용예정인 장애인 수를 기재하고, '시기'란은 1) 1/4분기 2) 2/4분기 3) 3/4분기 4) 4/4분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복수 선택 가능)

13.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e신(迅)고(告) 빠르고 편리한 e신고

01 사업장 등록 | 02 장애인명부및 임금대장등록 | 03 상시근로자 등록 | 04 부담(장려)금 내역등록 | 05 고용계획및 실시상황 보고등록 | 06 신고서 확인 | 07 전자신고 완료

2018년도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신고(청) 문의처 1588-1519 접속유지시간 29:58 시간연장

사업체 정보

① 사업체명	전자신고테스트사업체	② 대표자	홍길동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3
④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⑤ 업종(주된 생산품)	건축물 일반 청소업(세탁)	⑥ 업종코드	74211
⑦ 주소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6길 22 ((관철동))		우편물 수령지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6길 22 ((관철동))	
⑧ 사업장수	3(개)	⑨ 사업체 전화	043-111-2222	⑩ 사업체 팩스	051-230-1111
⑪ 사업장구분	총괄				
⑫ 담당자 성명	성춘향	일반전화	043-111-2222	휴대전화	010-6304-9273
전자우편	katedral@kead.or.kr				

2018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월별	⑬ 전체 근로자수	⑭ 적용제외 근로자수	⑮ 상시 근로자수	⑯ 의무 고용인원	⑰ 장려금 기준인원	⑱ 장애인 근로자수				⑳ 미달 고용인원		㉑ 장려금 제외인원	㉒ 장려금 지급인원
						전체	경증 장애인	⑲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⑲ 중증장애인 60시간 미만	미고용월	고용월		
1월	100	0	100	2	3	2	0	2	0	0	0	0	0
2월	105	0	105	3	4	2	0	2	0	0	0	0	0
3월	102	0	102	2	3	2	0	2	0	0	0	0	0
4월	100	0	100	2	3	1	0	0	1	0	1	0	0
5월	97	0	97	2	3	1	0	0	1	0	1	0	0
6월	100	0	100	2	3	1	0	0	1	0	1	0	0
7월	120	0	120	3	4	1	0	0	1	0	2	0	0
8월	115	0	115	3	4	1	0	0	1	0	2	0	0
9월	120	0	120	3	4	1	0	0	1	0	2	0	0
10월	117	0	117	3	4	1	0	0	1	0	2	0	0
11월	115	0	115	3	4	1	0	0	1	0	2	0	0
12월	118	0	118	3	4	1	0	0	1	0	2	0	0
합계	1309	0	1309	31	43	15	0	6	9	0	15	0	0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전년도(12월) 장애인 고용현황	㉓ 장애인 고용률	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	㉕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0.85 %	2 명	4

금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㉖ 고용예정직무	㉗ 전체 고용계획 인원	㉘ 장애인 고용계획 인원 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시기	고용방법
	관리자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사무종사자	10 명	5 명	2 명	0 명	1 명	2 명	1/4.4/4분기	1
	서비스종사자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판매종사자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 명	2 명	0 명	2 명	0 명	0 명	1/4.2/4.3/4분기	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단순노무종사자	7 명	5 명	2 명	3 명	0 명	0 명	1/4.2/4.3/4.4/4분기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 / 분할납부 신청 【 】)

㉙ 고용부담금	14,855,400 원	㉚ 고용장려금 산출액	0 원
㉛ 연계고용 감면액	0 원	㉜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445,670 원
㉝ 실 납부금액 (=㉙ - ㉚ - ㉛ - ㉜)			14,409,730 원

㉞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제1기분(1.31)	제2기분(4.30)	제3기분(7.31)	제4기분(10.31)
	14,409,730	0	0	0

이전 | 신고 전 출력 | 전자신고

신고내역 확인

① 전자신고 전에 내부보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 출력(신고 전 출력)을 클릭하시면 신고할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전자신고)를 클릭하여야 신고가 완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신고(전자신고)를 클릭해서 신고를 완료합니다.

* 전자신고가 완료되면 담당자 정보에 기재된 전화번호(휴대전화)로 메세지가 전송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14. 전자신고 완료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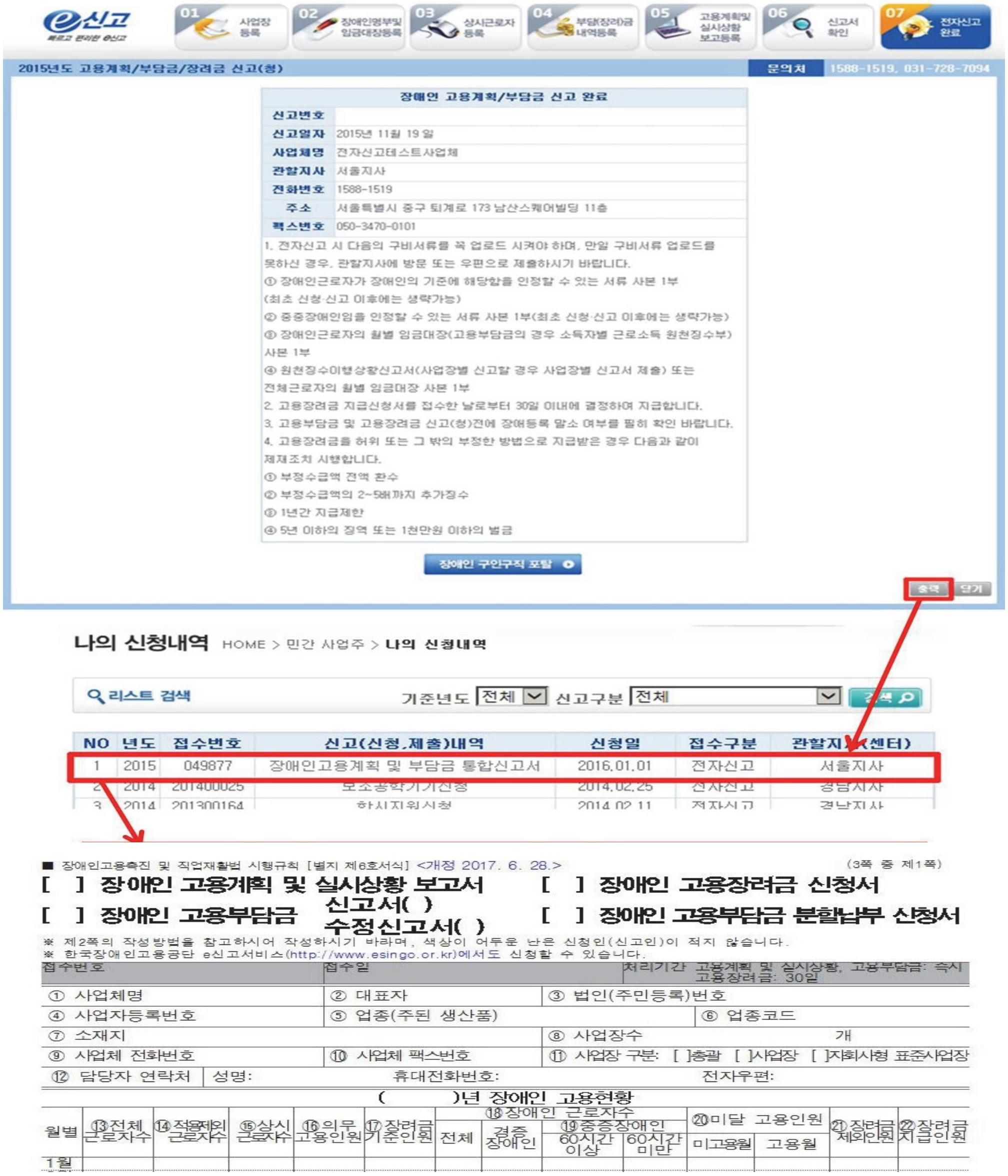

전자신고 완료 확인

- 전자신고 완료
  - 출력(출력)을 선택하면 나의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한 보고서를 선택하면 출력됩니다.

3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첨부서류

* 장애인 고용계획은 첨부서류 1~2를 제출,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은 첨부서류 1~4를 제출

⇩ 첨부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 생성)

[구비서류 양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별지 작성>

연번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장애인 근로자명	주민 등록 번호	장애 인정구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중증 (경증) 여부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장애 인정일	입사일	퇴사일	근무 직무	임금 (원)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

1. 장애인정 구분
☞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유형
☞ 1) 지체, 2) 뇌병변, 3) 시각, 4) 청각, 5) 언어, 6) 지적, 7) 정신, 8) 자폐성, 9) 신장, 10) 심장, 11) 호흡기, 12) 간, 13) 안면, 14) 장루, 요루 15) 뇌전증, 16) 국가유공자

3. 중증여부
1) 중증장애인, 2) 경증장애인

4.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 중증장애인 중에서 월의 근로시간이 1) 60시간 이상(2배수인정) 2) 60시간 미만

5. 장애인정일, 입사일, 퇴사일은 연도, 월, 일을 일련숫자 8자리로 기재(예: 20170101)

6. 근무 직종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중 해당 번호를 표시합니다.

7. 임금
☞ 장애인 근로자의 최종 월 급여액을 반드시 기재

8. 장려금/지원금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지급받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 명칭, 대상자수, 금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장애유형 및 등급〉

유형 \ 등급		☞ 장애분류 및 등급(중증장애인의 범위) 1	2	3	4	5	6	7
장애인복지법상 분류	지체장애	■	■	■(일부)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청각장애	╱	■					
	언어장애	╱	╱		╱	╱	╱	
	지적장애	■	■	■	╱	╱	╱	
	정신장애	■	■	■	╱	╱	╱	
	자폐성장애	■	■	■	╱	╱	╱	
	신장장애	╱	■	╱	╱		╱	
	심장장애	■	■	■	╱		╱	
	호흡기장애	■	■	■	╱		╱	
	간장애	■	■		╱		╱	
	안면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				╱	
	뇌전증장애	╱	■	■			╱	
국가유공장애인		■	■	■				

※ **음영처리 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사선은 해당 장애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지체장애인 3급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팔(어깨 또는 손 포함)에 장애가 있는 지체3급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10.1.1부터 **호흡기, 간질(뇌전증)장애**인의 경우 **3급까지 중증인정 범위 확대**
※ '11.8.21부터 **안면장애 5급**(확대)
※ '14.6.30부터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첨부서류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또는 지방보훈지청장 등이 발급하는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3.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체장애 3급에 한함)**
   ☞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중증으로 인정됩니다.

⇩ 첨부서류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2. **고용부담금:**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5호

⇩ 첨부서류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1호

Ⅲ. 주요 Q&A 및 유의사항

Q1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잃어 버렸습니다.

A1 아이디는 '아이디 찾기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이디, 사업체명, 대표자명을 입력하면 최초 등록 시 입력한 E-Mail 주소로 초기화된 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 시 마이페이지에서 아이디 확인 및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가능합니다.

Q2 사용자 본인 확인에 실패하였다고 인증이 안 됩니다.
어떤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A2 최초 회원가입 시 입력한 법인등록번호나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가입시 입력한 회원 정보의 법인등록번호나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인증서인지 확인한 후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통합대리인으로 해당 사업체의 인증을 담당자 개인의 인증서로 인증하는 경우 관할지사의 등록절차를 이용해야하며 1년 단위로 재등록해야합니다.

Q3 장애인 근로자 명부 업로드가 잘 되지 않습니다.

A3 문서보안 솔루션이나 사내보안으로 파일업로드가 제한되거나 문서파일이 변조된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 절차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장애인 명부입력 화면에서 예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2. 예제 엑셀파일을 다운받습니다.
3. 예제 엑셀파일에 맞는 형식으로 엑셀파일을 작성합니다.
4. 파일을 저장 후 엑셀 업로드 버튼을 이용하여 명부를 등록합니다.

※ 위 절차대로 진행했음에도 잘되지 않는 경우, 전자신고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및 호환성 보기 설정에 등록한 후 사이트를 새로고침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Q4 파일첨부 시 용량이 초과되었다고 업로드가 안 됩니다.

A4 파일첨부 시 허용용량(35Mb)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문구가 나타난다면 전자신고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및 호환성 보기 설정에 등록한 후 사이트를 새로고침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내 인터넷 회선의 업로드 속도가 느릴 경우 대기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문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5 신고 내용에 빠진 부분이나 잘못 등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5 전자신고 메뉴 중 신고서 삭제 신청서 메뉴를 이용하여 삭제신청을 등록하고 재신고 합니다.
※ 삭제신청을 등록하면 자동삭제 처리되므로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PART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란?

○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당해연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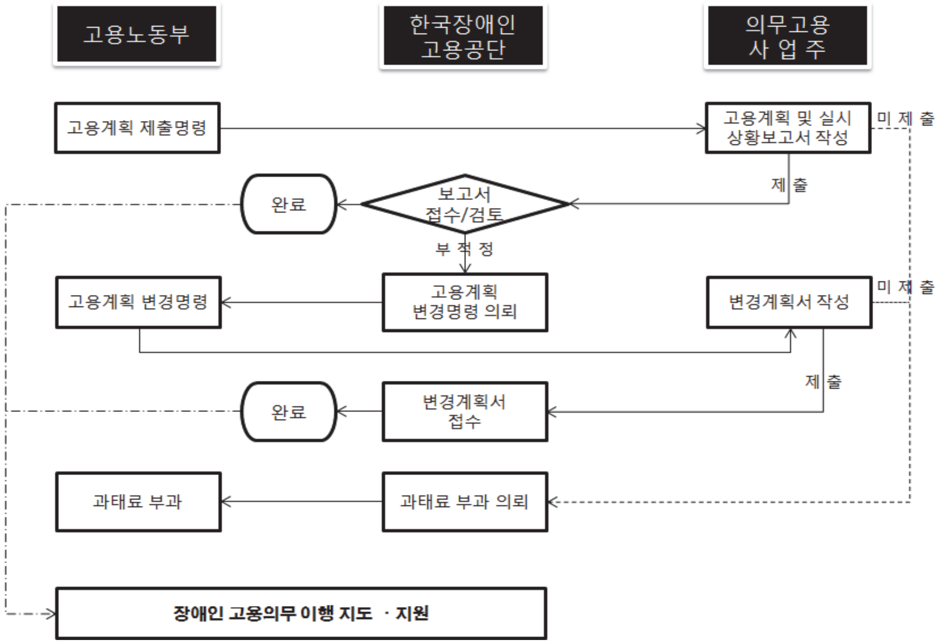

2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대상 사업주는?

○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민간기업 및 공공기관)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 및 자치단체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고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3 언제까지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이행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고용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주가 분리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현황을 모두 총괄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시 고용부담금/장려금과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사업체는 통합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5 장애인 고용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전자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전자신고는 e신고사이트(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우편 신고는 e신고사이트(www.esingo.or.kr)에서 『메인화면 중앙(또는 상단 고객센터)→서식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6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제출된 장애인 고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제출된 보고서는 **귀사의 고용의무 이행지도**에 활용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고용계획에 따른 이행을 위해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고용계획이 한명도 없거**나, **형식적인 작성**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노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그 계획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PART 3 장애인고용부담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Ⅰ.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

□ 고용부담금이란?

○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써,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 성격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Ⅱ.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1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 신고 · 납부대상: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전단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예시 1: 고용부담금 신고대상 사업주가 아닌 경우

특정 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어도, 월평균 100명 미만이면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88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수	1,060	70	70	70	70	70	90	90	90	**110**	**110**	**110**	**110**
의무고용인원	28	2	2	2	2	2	2	2	2	**3**	**3**	**3**	**3**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60명/12월 = 88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의무인원: 28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88명으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해당 월(9월, 10월, 11월, 12월)도 고용부담금 신고 · 납부대상에서 제외

□ 예시 2: 고용부담금 신고대상 사업주인 경우

특정 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어도, 월평균 100명 이상이면 100명 미만인 달도 고용부담금 산정

○ 월평균 상시 117명인 사업주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수	1,410	120	120	120	130	130	130	**90**	**90**	120	120	120	120
의무고용인원	34	3	3	3	3	3	3	**2**	**2**	3	3	3	3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410명/12월 = 117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의무인원: 34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7월, 8월)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월로 부담금을 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2 고용부담금 신고 주체에 대한 해석 및 예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주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
아니면,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서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지 ?

▣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 소속의 모든 사업장을 취합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학교(의료)법인의 경우 학교법인 본점소재지(서울 중구 소재), 법인 소속 OO고등학교(전남 광주 소재)가 존재하는 경우, 서울 중구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학교(의료) 법인이 해당 법인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와 OO고등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사업체의 경우 소속 지점, 공장, 영업소, 지사 등 모든 사업체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의무고용인원 산출은 사업장별로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인원에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소속 장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 아니라, 소속기관 등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예시: 별도의 법인이 아닌 국립학교 등은 교육부 소속기관임

▣ 각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 아니라, 각 시·도 교육감이 설치한 소속기관 및 소속 공립학교장 등이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3 부담금기초액이란?

□ 부담기초액 적용기준

○ **'부담기초액'이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 장애인 수의 비율에 따라 고용미달인원에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을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 '18년 적용 부담기초액

구 분 \ 기준(적용)연도		2018년도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장애인 비율	3/4이상인 경우 미달고용인원(1명당)	**945,000원**
	1/2이상~3/4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	**1,001,700원**
	1/4~1/2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	**1,134,000원**
	1/4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	**1,323,0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달의 미달고용인원	**1,573,770원**

※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6호) 〈별첨3〉

’18년 적용 부담기초액 고시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6호, ‘17.12.29.)

□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해당 연도 **매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기초액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단계 및 가산률)**

2018년 적용(2019년 신고)	
사업체 의무고용 이행정도	부담기초액
3/4이상	945,000원 (부담기초액)
1/2~3/4미만	1,001,700원 (6% 가산)
1/4~1/2미만	1,134,000원 (20% 가산)
1/4미만	1,323,000원 (40% 가산)
미고용	1,573,770원 (최저임금액)

○ **(부과방식)** 고용정도에 따라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월 단위 의무고용 **미달인원 전체에 일괄 적용 부과**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의무고용이행정도에 따른 부담기초액
>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Ⅲ.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절차 등

1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기간

□ 고용부담금 자진신고 · 자진납부시기

○ 2018년도분 고용부담금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공단 관할 지사에 자진하여 신고**(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하고 국고수납은행에 신고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부담금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에 더하여 해당 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 단, 2018년 신고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 기한 내 오류를 정정한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50으로 감면)

□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방법

○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1부 2.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뒤쪽 첨부서류 양식 참조〉 3.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4.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사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지사)
신고·납부	O 신고 및 납부기한 : 2019. 1. 1~2019. 1. 31. - 해당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부담금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O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를 통한 전자신고 - 신고방법 : [회원가입(Log-in)]-[전자신고하기] O 우편 등 Off-line 신고 -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2 고용부담금 납부방법

□ 고용부담금의 납부

○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4기로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일시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 기한 내 모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납부하더라도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는 경우 일시납부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바랍니다.

〈일시납부 사례〉

부담금액(A)	전액일시납부 공제액(B) B=A×3%	실 납부액(C) C=A-B
14,250,550원	427,520원	13,823,030원

※ 일시납부 공제액이 10원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단위 금액을 올립니다.

○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란에 체크(✓)한 후**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대상은 해당연도의 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균등분할방법 : 고용부담금액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제2기~제4기의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제1기분에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해당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담금 균등분할납부 신청 사업주는 제2기분부터 제4기분 각 납부기한 10일전까지 공단 관할지로부터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할지사(1588-15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분할납부 사례〉

제1기분 (1.31)	제2기분(4.30)	제3기분(7.31)	제4기분 (10.31)
1,064,000원	1,062,000원	1,062,000원	1,062,000원

○ 고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제1기분은 그 **연도의 1월 31일** 이내에,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 고용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기한 이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 1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2%를 연체금으로 부과합니다.

※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연체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독촉의 기한이 지난 경우,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므로 적기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 시 유의사항

○ 고용부담금을 **전자로 신고한 사업주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지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고지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의 "국고금>기금 및 기타국고" 란에서 조회

○ 신용카드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납부자부담)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로 발생합니다.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 전자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에 거래계좌가 있고, 거래계좌에 대한 전자금융 이용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고용부담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는 정정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납부 전 해당고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금액 산정방법

1 고용부담금 산정 계산식

부담금 =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의 연간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2 고용부담금 산정예시(민간사업주 기준)

□ **2018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금 산정**

월별	상시근로자수 (A)	고용의무인원 (B)=(A)x2.9%	장애인근로자수				가산인원				
			계	경증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3/4 이상	1/2~ 3/4미만	1/4~ 1/2미만	1/4 미만	미고용
매월	450	13=450x2.9%	1	1	0	0				12	

※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3.2%로 적용하여 산정

부담금 납부액 산정

- 부담금 납부액 : ① × ② × 12개월 = 190,512,000원
  - ① 부담기초액 : 1,323,000원(의무고용인원의 1/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 ② 미달인원 : 12명(의무고용인원-장애인근로자 수)

※ 3/4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3/4(소수점 이하 버림)
1/2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1/2(소수점 이하 버림)
1/4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1/4(소수점 이하 버림)
* 각 해당인원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고용이 있으면 의무이행이 높은 쪽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조업월수] =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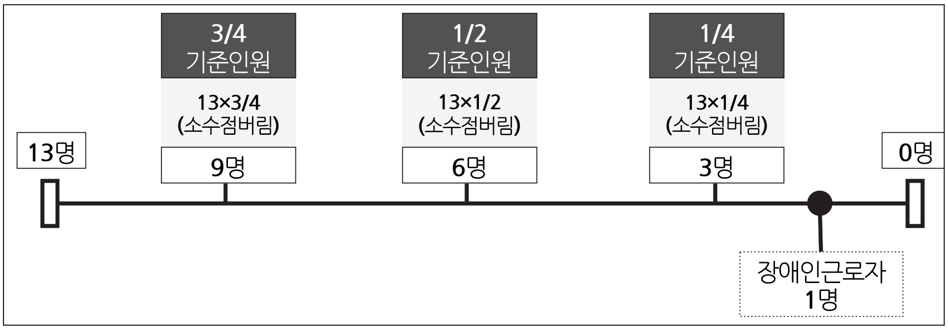

□ **2018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장애인 5명(경증 3명, 중증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금 산정**

▶ 중증장애인: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월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전제(중증2배수)

월별	상시 근로자 수 (A)	고용의무인원 (B)=(A) x 2.9%	장애인근로자수				가산인원				
			계	경증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3/4 이상	1/2~ 3/4미만	1/4~ 1/2미만	1/4 미만	미고용
매월	450	13=450 x 2.9%	5	3	2	0		6			

※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3.2%로 적용하여 산정

부담금 납부액 산정

부담금 납부액 : ① × ② × 12개월 = 72,122,400원

① 부담기초액 : 1,001,700원(의무고용인원의 1/2~3/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② 미달인원 : 6명(의무고용인원-장애인근로자 수)

※ 3/4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3/4(소수점 이하 버림)

1/2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1/2(소수점 이하 버림)

1/4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1/4(소수점 이하 버림)

※ [조업월수] =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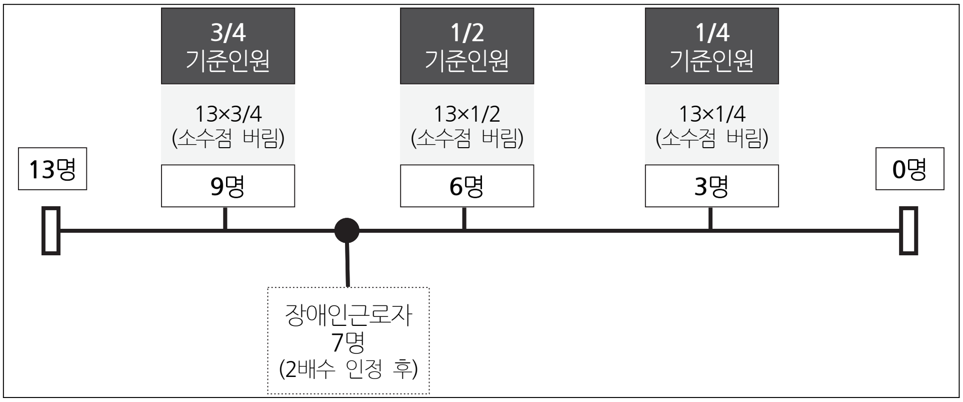

□ **2018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242명(복합예시)**

월별	상시근로자수 (A)	고용의무인원 **(B)= (A)x2.9%**	장애인근로자수				가산인원				
			계	경증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3/4 이상	1/2 ~3/4 미만	1/4 ~1/2 미만	1/4 미만	미고용
합계	2,900	75	27	17	7	3	3	6	21	7	8
1월	200	5	2	2	0	0		3			
2월	200	5	2	1	1	0	2				
3월	200	5	2	1	0	1		3			
4월	200	5	1	1	0	0			4		
5월	200	5	5	4	1	0					
6월	200	5	5	2	3	0					
7월	200	5	4	3	0	1	1				
8월	300	8	0	0	0	0					8
9월	300	8	1	1	0	0				7	
10월	300	8	2	1	1	0			5		
11월	300	8	2	1	0	1			6		
12월	300	8	1	0	1	0			6		

※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3.1%로 적용하여 산정

※ 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

부담금 납부액 산정

부담금 납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54,510,360원

① [3/4 이상 고용구간] 미달인원 3명×945,000원 = 2,835,000원

② [1/2~3/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6명× 1,001,700원 = 6,010,200원

③ [1/4~1/2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21명×1,134,000원 = 23,814,000원

④ [1/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7명×1,323,000원 = 9,261,000원

⑤ [장애인 미고용] 미달인원 8명×1,573,770원 = 12,590,160원

※ 3/4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3/4(소수점 이하 버림)
1/2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1/2(소수점 이하 버림)
1/4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1/4(소수점 이하 버림)

Ⅴ. 주요 Q&A 및 유의사항

1 주요 Q&A

Q1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A1 법인 사업주의 경우 법인 단위로 신고해야 하므로, 법인 소속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2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고용부담금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 됩니다.

- 가산금: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고용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연체금: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Q3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는데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A3 월평균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 부담금을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용부담금(0원)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타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기타 문의사항

☞ 신고·납부관련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 참조
공단 홈페이지 > 상단 전체메뉴 > 사업주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부담금신고납부안내 > 질문과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문의사항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018년도분 고용부담금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법 제35조 가산금(부담금의 100분의 10)

단, 1월말까지 신고한 고용부담금이 실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2월말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내 오류를 정정한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게 됩니다.('18년 신고부터 최초 적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PART 4

장애인고용장려금

Ⅰ.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요

1 고용장려금 제도 설명

□ **고용장려금이란?**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 고용장려금 업무 처리 흐름도

관할지사로 신청(사업주) → 접 수 (지사) → 서류심사 현지실사 (지사) → 공단본부로 지급요청 (지사) → 지급 (사업주계좌 이체)

※ 고용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지급(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Ⅱ.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1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019년 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장려금 지급 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원합니다.**

3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단위 : 원)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 고
지급단가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지급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고용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

4 고용장려금 신청 시기(분기별 신청)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해당연도 4월 1일부터 3년 이내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3년 이내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3년 이내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 이내

☞ 장애인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전자신청(www.esingo.or.kr)
○ 우편신청 및 방문접수
☞ 사업주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Ⅲ.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부정수급 및 부정신청

1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제한 지원·장려금>

「고용보험법」	· 고용창출지원사업(시간제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지원사업(유망창업기업고용) ·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퇴직자재고용) · 고용촉진지원금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등 장려금)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중소기업청년(장년)인턴제지원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복귀지원금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인건비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① **부정수급액 환수**, ② **5배 범위내 추가 징수**, ③ **1년간 지급제한**, ④ **형사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 부정수급 제재 내용

① 부정수급액 환수

- 제재내용 :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예) 부정수급액 100백만원 → 100백만원 환수

② 추가 징수

- 제재내용 :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내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추가 징수 범위 >

구 분	추가징수액	비 고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액	'11.3.16.이전 위반행위는 부정수급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액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	

※ 부정수급자가 고용장려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 징수 면제**

③ 지급 제한

- 제재내용 : 부정수급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④ 벌칙 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함
  -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함
- 제재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사고발 기준

- 부정수급 적발일 전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 적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 부정수급금이 분기별 평균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지사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고용장려금 부정신청 제재

□ 고용장려금 부정신청 제재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 부정신청 제재 내용

○ 지급 제한
- 제재내용 : 부정수급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고용장려금 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자를 공단, 지방노동관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부정수급액 1억원 이상	부정수급액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부정수급액 2천만원 미만	비 고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부정수급액×10/100	·1천만원 한도 ·1천원미만 절사

예) 부정수급액 1,000만원 → **포상금 100만원(1,000만원×10/100)**

Ⅳ.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방법

1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19년)
·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4%(소수점이하 올림)】

용어설명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3.1%)에 해당하는 인원
  ※ 예) 상시 100명일 경우
    ☞ 100명 × 3.1% = 4명(소수점이하 올림)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수에서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및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을 제외한 인원
  ※ 예) 장애인근로자 5명, 고용장려금 기준인원 4명일 경우
    ☞ 5명 - 4명 = 1명

고용장려금 산정 Tip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2 고용장려금 산정 예시

① 2019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월 100명, 중증남성 장애인 6명을 고용한 사업주

월별	전체 근로자 수	적용 제외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의무 고용 인원	장려금 기준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장려금 제외 인원	장려금 지급 인원	고용 장려금
						전체	경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미고용월	고용월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110	10	100	3.1 → 3	3.1 → 4	6	-	6	-	-	-	-	2	100만원

※ 장애인근로자 전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정

고용장려금 산정

❶ 장려금 기준인원 : 100명 × 31/1000 (소수점은 올림) = 4명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❷ 장려금 지급인원
- 6명(장애인 근로자 수) - 4명(장려금 기준인원) = 2명

❸ 장려금 산정액
- 2명(장려금 지급인원) × 500천원(중증남성 지급단가) = 1,000천원

② 2019년 1분기(1월~3월) 신청한 사업주(민간사업체) 산정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

월별	전체 근로자 수	적용 제외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의무 고용 인원	장려금 기준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장려금 제외 인원	장려금 지급 인원	고용 장려금
						전체	경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미고용월	고용월			
								60 시간 이상	60 시간 미만					
1월	80	-	80	2.4→2	2.4→3	6	4	2	-	-	-	2	1	300천원
2월	60	-	60	1.8→1	1.8→2	6	4	2	-	-	-	2	2	780천원
3월	100	-	100	3.1→3	3.1→4	6	4	2	-	-	-	2	-	-
합계	240	-	240	6	9	18	12	6	-	-	-	6	3	1,080천원

<장애인근로자 현황>

성 명	장애유형 및 등급	중증여부(성별)	입사일	임 금	고용보험 가입여부	최저임금여부
홍길동	지체 2급	중증(남)	’11.3.1	1,500천원	O	최저임금이상
김경선	지체 4급	경증(여)	’11.7.1	2,000천원	O	
김영철	지체 2급	중증(남)	’13.4.1	800천원	O	
이민성	지체 6급	경증(남)	’13.7.1	2,000천원	×	
진동이	지체 5급	경증(남)	’14.1.1	1,500천원	O	
정숙이	지체 4급	경증(여)	’15.1.1	1,000천원	O	최저임금미만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동일 가정

고용장려금 산정

❶ 1월
- 장려금 기준인원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3.1% 해당하는 인원)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 장려금 제외인원 : ‘이민성’, ‘정숙이’
  -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인원 : ‘진동이’
  - ‘진동이’(경증남성)는 해당단가 300천원

☞ 1월 고용장려금 = 300천원

❷ 2월
- 장려금 기준인원 : ‘홍길동’, ‘김경선’(3.1% 해당하는 인원)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 장려금 제외인원 : ‘이민성’, ‘정숙이’
  -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인원 : ‘김영철’, ‘진동이’
  - ‘김영철’은 중증 남성이므로 해당 단가 500천원과 임금의 60%인 480천원 중 낮은 금액 480천원 적용
  - ‘진동이’(경증남성)는 해당단가 300천원 적용

☞ 2월 고용장려금 = 480천원 + 300천원 = 780천원

❸ 3월
- 장려금 기준인원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 ‘진동이’(3.1% 해당하는 인원)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 장려금 제외인원 : ‘이민성’, ‘정숙이’
  -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인원 : 해당사항 없음

☞ 3월 고용장려금 = 0원

❹ 2019년 1분기 고용장려금은

☞ 300천원(1월) + 780천원(2월) + 0원(3월) = 1,080천원

③ 2019년 1분기(1월~3월) 신청 사업주(공공기관)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

월별	전체 근로자수	적용 제외 근로자수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 인원	장려금 기준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장려금 제외 인원	장려금 지급 인원	고용 장려금
						전체	경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미고용월	고용월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1월	80	10	70	2.4→2	2.4→3	6	4	2	-	-	-	2	1	300천원
2월	70	-	70	2.4→2	2.4→3	6	4	2	-	-	-	2	1	300천원
3월	80	-	80	2.7→2	2.7→3	6	4	2	-	-	-	2	1	300천원
합계	230	10	220	6	9	18	12	6	-	-	-	6	3	900천원

〈장애인근로자 현황〉

성 명	장애유형 및 등급	중증여부(성별)	입사일	임 금	고용보험 가입여부	최저임금여부
홍길동	지체 2급	중증(남)	'11.3.1	1,500천원	○	최저임금이상
김경선	지체 4급	경증(여)	'11.7.1	2,000천원	○	
김영철	지체 2급	중증(남)	'13.4.1	800천원	○	
이민성	지체 6급	경증(남)	'13.7.1	2,000천원	×	
진동이	지체 5급	경증(남)	'14.1.1	1,500천원	○	
정숙이	지체 4급	경증(여)	'15.1.1	1,000천원	○	최저임금미만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동일 가정

고용장려금 산정

❶ 1월, 2월, 3월

- 장려금 기준인원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3.4% 해당하는 인원)
  - 지급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순으로 산입
- 장려금 제외인원 : '이민성', '정숙이'
  -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지급인원 :
  - '진동이'(경증남성)는 해당단가 300천원 적용

❷ 2019년 1분기 고용장려금은

☞ 300천원(1월) + 300천원(2월) + 300천원(3월) = 900천원

Ⅴ. 최저임금제도 안내

1 최저임금제도 이해

□ 최저임금제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모두 포함됩니다.

2 2018년 최저임금액

구 분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전(全) 산업		7,530원	60,240원
감액적용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0% 감액)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6,777원	54,216원

※ 2019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350원

Ⅵ.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1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 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은**

> ① 지급받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 ②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됨(시행규칙 제2조)

① 최저임금 포함임금

○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산출함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

②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확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함(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

-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ⅰ)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되, 근로제공 의무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함

> ◈ 일급의 경우는 8시간 기준 시는 일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그 이외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과 비교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 시간당 임금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

-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함

i)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ii)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임금형태별 판단방법과 예시

□ 시간급의 경우

○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 일급의 경우

○ 임금이 1일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환산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

산정례	임금이 일급인 경우
① 1일의 임금("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이 50,000원인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의 판단 - 시간당 임금 산정 : 50,000원÷7시간 ≒ 7,142원 - 시간당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② 1일의 임금("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말함)이 70,000원인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인 경우의 판단 - 8 + 1.5시간〔시간외근로시간 (1시간)〕 = 9.5시간 - 시간당 임금산정 : 70,000원÷9.5시간 ≒ 7,368원 - 시간당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의 경우

○ 임금이 주급(유급 처리된 임금을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함

산정례	임금이 주급(유급처리된 임금을 포함된 금액)인 경우
① 1주의 임금이 350,000원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350,000원÷(40+유급주휴일 8시간) ≒ 7,291원 - 시간당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② 1주 임금이 330,000원인 근로자로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째는 35시간(5일×7시간), 2주째는 42(6일×7시간), 3주째는 35시간(5일×7시간), 4주째는 42시간(6일×7시간)인 경우 - 시간당 임금산정 : 330,000원÷[{(35+42+35+42)÷4주}+유급주휴일 7시간] ≒ 7,252원 - 시간당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 월급제의 경우

○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1주 40시간인 경우

$$\frac{(40\text{시간} + 8\text{시간}) \times 52\text{주} + (1\text{일}\times 8\text{시간})}{12\text{개월}} ≒ 209$$

☞ 1주 44시간인 경우

$$\frac{(44\text{시간} + 8\text{시간}) \times 52\text{주} + (1\text{일}\times 8\text{시간})}{12\text{개월}} ≒ 226$$

<table>
<tr><th>산정례</th><th>월급제의 경우</th></tr>
<tr><td colspan="2">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150만원 ÷ 209시간 ≒ 7,177원
-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td></tr>
<tr><td colspan="2">②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45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160만원 ÷ 226시간 ≒ 7,079원
-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td></tr>
</table>

□ 포괄산정 임금제의 경우

○ 포괄산정 임금제의 경우에는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 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166374, '90. 11. 26, 임금32240-8895, '90. 6. 23, 임금32240-4454, '90. 3. 28)

산정례	포괄임금산정례의 경우
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시간외근로를 총 6시간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6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6시간) × 1.5= 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60만원 ÷ (209시간 + 9시간) ≒ 7,339원 -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②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시간외 근로를 총 6시간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수 : 226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 6시간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70만원 ÷ (226시간 + 6시간) ≒ 7,327원 -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 **도급의 경우**

○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은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 임금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시행령 제5조제2항)

□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일급제·월급제·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월간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이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

(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4770, '90. 4. 3)

산정례	도급 또는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174시간 + 유급주휴시간), 월 연장근로는 40시간을 하는 것으로 정한 후, 월 임금 1,400,000원(월 통상임금 1,000,000원 +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4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생산고 임금 500,000원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생산고 임금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50만원 ÷ 214시간(174+40)≒ 2,336원 - 월 임금의 시간당 임금의 산정: 100만원 ÷ 209시간 ≒ 4,784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336원 + 4,784원 = 7,120원 -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②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191시간+유급주휴시간), 월 연장근로는 40시간을 하는 것으로 정한 후, 월 임금 1,700,000원(월통상임금 1,100,000원 +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생산고 임금 550,000원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생산고 임금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55만원 ÷ 231시간(191+40)≒ 2,380원 - 월 임금의 시간당 임금의 산정: 110만원 ÷ 226시간 ≒ 4,867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380원 + 4,867원 = 7,247원 -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8.1.1.~2018.12.31 : 7,53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 할 때에는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 (주급·일급·월급)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함

산정례	시간급 임금 총근로시간 환산
1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 시간급임금 환산 총 근로시간수 - 1일 : 28시간(24시간 + 야간근로가산수당 환산분 4시간) - 1주 : 98.3시간 [(28시간 x 365 ÷ 2) ÷ 52주] - 1월 : 426시간 [(28시간 x 365 ÷ 2) ÷ 12개월] ※ 만일, 1일 근로시간 중에 휴게(휴식)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함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산정내역 예시】

(단위 : 시간, 원)

근무형태		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3시간 부여			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부여		
		격일제(I 형)	1일 2교대제(II형)		격일제(III형)	1일 2교대제(IV형)	
근무시간대		7시~익일7시	7시~19시	19시~익일7시	7시~익일7시	7시~19시	19시~익일7시
휴게시간	점심	1	1	-	1	1	-
	저녁	1	-	1	1	-	1
야간휴게시간(-)		3	-	3	4	-	4
실근로시간		19	11	8	18	11	7
야간근무 가산시간(+)[1]		2.5	-	2.5	2	-	2
임금지급 기준시간(A)		21.5	11	10.5	20	11	9
예1) 시급이 7,530원인 경우	일 임금액 (B)[2]	161,895	82,830	79,065	150,600	82,830	67,770
	월 임금액 (C)	2,462,153 (B×365/2/12)	2,519,412 (B×365/12)	2,404,893 (B×365/12)	2,290,375 (B×365/2/12)	2,519,412 (B×365/12)	2,061,337 (B×365/12)
예2) 시급이 8,350원인 경우	일 임금액 (B)[2]	179,525	91,850	87,675	167,000	91,850	75,150
	월 임금액 (C)	2,730,276 (B×365/2/12)	2,793,770 (B×365/12)	2,666,781 (B×365/12)	2,539,791 (B×365/2/12)	2,793,770 (B×365/12)	2,285,812 (B×365/12)

1)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2) 일 임금액(최저임금 기준) = 임금지급기준시간(A) × 약정시급액(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휴게(휴식)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

3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④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함

최저 임금의 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①+②+③)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의미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공 통 요 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산입임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시행시기는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시행일: 특별시·광역시 ‘09.7.1, 제주도·시지역 ’10.7.1, 기타지역 ‘12.7.1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것
-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이 아닐 것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 근로자의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4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란?

□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평가 ⇨	결재 ⇨	통보
사업주	지방노동지청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방노동지청	사업주

5 최저임금의 산입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에 대한 판단

□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 · 월차휴가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음(노동부 행정해석 임금32240-19950, '89. 11. 28)**

※ 1994.11.14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주요골자를 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유급휴일근로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수당만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임금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임을 명확히 함(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위 행정해석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현행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함

○ 따라서, 유급휴일임금, 휴가를 가더라도 지급되는 연·월차휴가수당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

□ 상여금

○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산입됨(노동부행정해석 임금정책과 719, '04.3.4, 임금68200-894, '01. 12. 29)

□ 생산장려수당 등

○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다만, 이러한 명목의 임금이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어 매월 일정액 지급된다면 산입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21666, '89. 12. 29)

□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

○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는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381, '89. 1. 12)

○ 따라서,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는 현물급여이건 현금급여이건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임금에서 제외함

□ 봉사료

○ 봉사료는 사용자가 일괄관리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21667, '89. 12. 29)

○ 다만, ㉮『기본급화된 봉사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00-525, '01. 7. 27)되며,

○ ㉯봉사료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20-525, '00.11.3)

Ⅶ. 주요 Q&A 및 유의사항

Q1 장애인을 1명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경우, 초과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을 1명만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 상시근로자 25명 × 3.1% = 1명(소수점이하 올림)

∴ 1명 초과하는 인원부터 고용장려금 지급되므로, 최소 2명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Q2 2개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2 고용장려금 신청주체는 사업주(법인)이므로 법인이 모든 사업장의 고용현황을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3 일용직 근로자(계약직 포함)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3 일용직 근로자(계약직 포함)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산정 합니다.

Q4 6급 장애인근로자는 언제까지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나요?

A4 2018년부터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한시지원(만 4년)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지원합니다.

Q5 고용장려금 산정시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인정되나요?

A5 고용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2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부담금 및 장애인 고용계획에서는 월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인정합니다.

〈별첨 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5. 29.> (3쪽 중 제1쪽)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수정신고서(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고용부담금: 즉시 고용장려금: 30일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주된 생산품)		⑥ 업종코드
⑦ 소재지		⑧ 사업장수 개	
⑨ 사업체 전화번호	⑩ 사업체 팩스번호	⑪ 사업장 구분: [ ]총괄 [ ]사업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⑫ 담당자 연락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년 장애인 고용현황

월별	⑬전체 근로자수	⑭적용제외 근로자수	⑮상시 근로자수	⑯의무 고용인원	⑰장려금 기준인원	⑱장애인 근로자수 전체	⑱ 경증 장애인	⑱ ⑲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⑱ ⑲중증장애인 60시간 미만	⑳미달 고용인원 미고용월	⑳미달 고용인원 고용월	㉑장려금 제외인원	㉒장려금 지급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전년도(12월) 장애인 고용현황	㉓ 장애인 고용률	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	㉕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㉖ 고용 예정직무	㉗ 전체 고용계획 인원	㉘ 장애인 고용계획 인원 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시기	고용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㉙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㉚ 계좌실명번호	
㉛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지원금 명칭		대상자수	금 액
				명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 분할납부 신청

㉜ 고용부담금				㉝ 고용장려금 산출액			
신고	원	수정신고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㉞ 연계고용 감면액				㉟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원
신고	원	수정신고	원				
㊱ 실 납부금액(= ㉜ - ㉝ - ㉞ - ㉟)							원
㊲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제1기분(1.31.)		제2기분(4.30.)		제3기분(7.31.)		제4기분(10.31.)
	원		원		원		원
㊳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 = [(수정신고 금액㉜-㉝-㉞) - (신고 금액㉜-㉝-㉞)]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 제5항 · 제8항 · 제10항, 제22조제3항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신청·신고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고서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99명 이하인 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나.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 신고하는 사업주)
   가. 고용계획 및 부담금 신고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근로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인원으로 산입하되, 1)사업장(모기업) 신고서, 2)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고서, 3)총괄신고서['1)'와 '2)'의 합산]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고용장려금 신청사업주(모기업)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각각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작성방법>

▷ 사업주 기본 정보(공통 작성사항)

1. ③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를, 개인사업주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④란에는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점(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⑥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명과 주된 생산품명과 세세분류 5자리의 업종코드(아라비아 숫자)를 적습니다.
4. ⑪란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는 "총괄"란에 √ 표시합니다.

▷ 장애인 고용현황(공통 작성사항)

5. ⑬란에는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6. ⑭란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7. ⑮란의 "상시근로자"는 "⑬전체 근로자수 - ⑭적용제외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8. ⑯란의 "의무고용인원"은 "⑮상시근로자 × 의무고용률(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에 따라 월별로 산출하여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별로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소속된 모든 사업장별 인원을 집계하여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합니다.
9. ⑰란의 "장려금 기준인원"은 "⑮상시근로자 × 의무고용률(1명 미만의 끝수는 올림)』에 따라 월별로 산출하여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별로 "장려금 기준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별 인원를 집계하여 "장려금 기준인원"을 산출합니다.
10. ⑱·⑲란에는 월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인 장애인 근로자의 수를 장애정도에 따라 적습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의 경우 총괄신고서에 모기업의 장애인 수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수를 합산하여 적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경증 남성 장애인은 1/2로 산정(1명 미만의 끝수는 올림)합니다.
11. ⑳란의 "미달고용인원"은 [⑱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 ⑲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 ⑯의무고용인원]을 월별로 산정하여 적되,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월(月)은 "미고용월"란에, 장애인을 고용한 달에는 "고용월"란에 적습니다.
12. ㉑란의 "장려금 제외인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수와 고용노동부 고시(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인원을 합산하여 월별로 적습니다.
13. ㉒란의 "장려금 지급인원"은 "⑱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 ㉑장려금 제외인원 - ⑰장려금 기준인원"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4. ㉓란에는 직전년도 12월의 [(⑱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 ⑲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 ⑮상시근로자수]를 적습니다.
15. ㉔란에는 직전년도 12월의 "⑳미달고용인원" 수를 적습니다.
16. ㉕란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에는 1)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 2)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의 부족, 3)장애인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 4)장애인용 시설 또는 장비의 부족, 5)그 밖의 사유로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적되(우선순위에 따라 복수선택 가능), 그 밖의 사유의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7. ㉖란의 "고용예정 직무"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개의 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18. ㉗란의 "전체 채용계획 인원"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채용계획 인원을 적습니다.
19. ㉘란의 "장애인 고용계획"의 "인원"란에는 금년도 채용예정 장애인 수를 적고, "시기"란에 1) 1/4분기, 2) 2/4분기, 3) 3/4분기, 4) 4/4분기로 구분하여 적으며, "고용방법"은 1)직원 채용 시 장애인 가점 부여, 2)장애인 구분모집 실시, 3)공단 등 관련 기관에 취업알선 의뢰, 4)주문식 · 맞춤훈련 프로그램 활용, 5)기타(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작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20. ㉙란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에는 ㉒란의 "장려금 지급인원"에 고용노동부 고시(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규정된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된 월별 장려금의 합계액에서 ㉜란의 "고용부담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 ㉚란의 "계좌실명번호"에는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은행계좌의 실명번호로 법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사업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2. ㉛란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지급받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명칭, 대상자수와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

23. ㉜란의 "고용부담금"에는 ⑳란의 "미달 고용인원"을 미고용월(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과 고용월(장애인을 고용한 달)로 구분하여 계산된 월별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월 고용부담금액 산정]
• 미고용월: 미달인원 X 월 최저임금액
• 고용월: 미달인원 X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차등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24. ㉝란의 "고용장려금 산출액"에는 ㉒란의 "장려금 지급인원"에 고용노동부 고시(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규정된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된 월별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사업주(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려금을 제외한 사업주(모기업)에서 발생한 고용장려금액만을 적습니다.
25. ㉞란의 "연계고용 감면액"에는 직업재활시설 등과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고용부담금 감면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계고용 감면액은 부담금 납부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26. ㉟란의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에는 납부할 부담금을 전액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시납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27. ㊲란의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는 ㊱실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로 균등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균등 분할한 금액에 1천원 미만의 금액이 나올 경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각 분기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28.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㉖~㉘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㉙~㉛란 및 ㉟~㊲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9. ㊳란의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님), 고용부담금의 차액에 대한 가산금은 추후 고지됩니다.

[첨부서류 양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번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장애인 근로자명	주민등록 번호	장애인정 구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중증(경증) 여부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장애 인정일	입사일	퇴사일	근무 직무	임금(원)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

※ 위의 표에는 아래의 설명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나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1. 장애인정구분: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유형: 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장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6)지적장애, 7)정신장애, 8)자폐성장애, 9)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요루장애, 15)뇌전증장애, 16)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3. 중증(경증) 여부: 1)중증장애인, 2)경증장애인
4.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중증장애인 중에서 해당 월의 근로시간이 1)60시간 이상, 2)60시간 미만
5. 장애인정일, 입사일 및 퇴사일은 연도, 월, 일을 일련숫자 8자리로 작성(예시: 20120101)
6. 근무 직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 해당 번호를 표시
7. 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최종 월 급여액을 작성
8.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을 작성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인(신청인)에게 통지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별첨 2>

[별지 제3호서식]

고용부담금·장려금·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연계고용감면 통합대리인([ ] 선임 [ ] 변경 [ ] 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사업주 (신청인·위임자)	법인(개인)사업체명 (대 표 자 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		

상기 신청인은 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연계고용부담금감면신청·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신고(청)서 제출에 관한 대리인(선임·변경·해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신청인) (법인(개인)사업주/인감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위 임 장(소속 임직원)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신고(청)서의 제출 및 워크투게더(전자신고(청)) 이용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______________(법인(개인)사업주/인감날인)

위임 받은 자 (선임·변경)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직위 또는 직책		위임자와의 관계	
해임	성 명		해임사유	

※ 구비서류 :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위 임 장(대행기관)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신고(청)서의 제출 및 워크투게더(전자신고(청)) 이용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______________(법인(개인)사업주/인감날인)

위임 받은 자	대행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위임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 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일자	. . .		※ 결재	담당	부장	지사장
	접수번호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별첨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76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별첨 4〉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338개) ('18. 12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5)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77)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u>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u>**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u>한국산림복지진흥원</u>**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1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의료법인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u>**한국수목원관리원**</u>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신규·변경지정 대상 공공기관은 밑줄 표시

2018년도 지방공기업 현황 (847개소) ('18. 12월 현재)

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및 공단 (직영 제외) 151개소

구분			기관명
서울	공사	광역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공단	광역	서울시설공단
		기초	종로구시설공단, 중구시설공단, 용산구시설공단, 성동구도시공단, 광진구시설공단, 동대문구시설공단, 중랑구시설공단, 성북구도시공단, 강북구도시공단, 도봉구시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은평구시설공단, 서대문구도시공단, 마포구시설공단, 양천구시설공단, 강서구시설공단, 구로구시설공단, 금천구시설공단, 영등포구시설공단, 동작구시설공단, 관악구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송파구시설공단, 강동구도시공단
부산	공사	광역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공단	광역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기초	기장군도시공단
대구	공사	광역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공단	광역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기초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	공사	광역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공단	광역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기초	중구시설공단, 미추홀시설공단, 연수구시설공단, 남동구도시공단, 부평구시설공단, 계양구시설공단, 서구시설공단, 강화군시설공단
광주	공사	광역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단	광역	광주환경공단
		기초	광산구시설공단
대전	공사	광역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공단	광역	대전시설공단
울산	공사	광역	울산도시공사
	공단	광역	울산시설공단
		기초	중구도시공단, 남구도시공단, 울주군시설공단
세종	공단	광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구분			기관명
경기	공사	광역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기초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하남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양평공사
	공단	기초	안양시설공단, 의정부시설공단, 시흥시설공단, 파주시설공단, 군포시설공단, 김포시설공단, 이천시설공단, 양주시설공단, 안성시설공단, 포천시설공단, 오산시설공단, 과천시설공단, 여주시설공단, 가평시설공단, 연천시설공단
강원	공사	광역	강원도개발공사
		기초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태백관광공사
	공단	기초	동해시설공단, 속초시설공단, 영월시설공단, 정선시설공단
충북	공사	광역	충북개발공사
	공단	기초	청주시설공단, 단양관광공단
충남	공사	광역	충남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기초	당진항만관광공사
	공단	기초	충주시설공단, 천안시설공단, 보령시설공단, 아산시설공단, 부여시설공단
전북	공사	광역	전북개발공사
		기초	장수한우지방공사
	공단	기초	전주시설공단
전남	공사	광역	전남개발공사
		기초	여수시도시공사
경북	공사	광역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기초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공단	기초	포항시설공단, 경주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남	공사	광역	경남개발공사
		기초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공단	기초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설공단, 창녕시설공단, 밀양시설공단, 사천시설공단, 여수도시관리공단
제주	공사	광역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출자·출연기관

1) 출자기관: 90개소

구분		기관명
서울	광역	서울관광마케팅㈜
	기초	(동작구)어르신행복㈜, (성동구)성동미래일자리㈜
부산	광역	㈜벡스코, 아시아드CC㈜
대구	광역	㈜엑스코
인천	광역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기초	(계양구)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광주	광역	한국씨이에스㈜
세종	광역	농업회사법인세종로컬푸드㈜
경기	광역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기초	(안산시)안산도시개발㈜, (시흥시)㈜시흥매화산단개발, (가평군)자나라인㈜, (용인시)경기용인테크노밸리㈜, (김포시)김포빅데이터, (파주시)파주장단콩웰빙마루, 파주디엠지곤돌라㈜ (양주시)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식회사, (의정부시)의정부리듬시티㈜,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
강원	광역	㈜강원심층수, 엘엘개발㈜
	기초	(춘천시)남춘천산업단지개발㈜, 춘천학곡도시개발㈜, (원주시)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강릉시)㈜강릉농산물도매시장, (삼척시)㈜블랙밸리컨트리클럽, (영월군)㈜영월에너지스테이션, (인제군)㈜아름다운인제관광
충북	광역	충주에코폴리스㈜
	기초	(청주시)㈜청주테크노폴리스, (충주시)충주메가폴리스㈜,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 (증평군)증평이산업단지개발㈜, (괴산군)괴산대제산업단지㈜,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오선일반산업단지㈜, (진천군)송두산업단지개발㈜
충남	기초	(보령시)㈜대천리조트, (논산시)농업회사법인㈜동부팜
전북	기초	(김제시)지앤아이㈜, (익산시)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 (완주군)완주테크노밸리㈜, 완주농공단지개발㈜, (임실군)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순창군)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 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 (고창군)농업회사법인 고창황토배기유통㈜

구분		기관명
전남	기초	(목포시)목포대양산단㈜, (고흥군)농업회사법인고흥군유통㈜, (영광군)㈜탑글로리, 농업회사법인영광군유통㈜, (완도군)완도전복㈜, 화신산업개발㈜, (진도군)㈜진도청정푸드밸리, (담양군)담양그린개발㈜, 담양대숲마루주식회사, (순천시) 순천로컬푸드주식회사
경북	광역	경북통상㈜,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
	기초	(포항시)포항테크노밸리AMC㈜, 포항테크노밸리PFV㈜, (경주시)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신경주지역개발㈜, (울진군)㈜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영천시)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개발㈜
경남	광역	㈜경남무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기초	(창원시)마산해양신도시㈜, 평성인더스트리주식회사, (진주시)진주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 (김해시) ㈜김해테크노밸리,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거제시)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 (의령군)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 (합천군)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 (사천시)사천아이씨도시개발주식회사, (밀양시)밀양관광단지조성산업단 주식회사, (창녕군)영남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창원시) 덕산일반산업단지㈜
제주	광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인㈜

2) 출연기관: 606개소

구 분		기 관 명
서울	광역 (18)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관광재단
	기초 (34)	(종로구)종로문화재단 / (중구)중구문화재단,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성북구)성북문화재단 / (노원구)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환경재단/ (은평구)은평구민장학재단 / (마포구)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 (양천구)양천사랑복지재단 / (강북구)꿈나무키움장학재단, 강북문화재단 / (강서구)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 (성동구)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 (광진구)광진문화재단 / (동대문구)동대문문화재단 (구로구)구로문화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구장학회 / (금천구)금천미래장학회, 금천문화재단 / (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장학재단 / (동작구)동작복지재단 / (서초구)서초다산장학재단,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서초문화재단 / (강남구)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 (송파구)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 (용산구) 용산복지재단, 도봉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부산	광역 (17)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문화재단,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의료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영화의전당,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문화회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초 (11)	(중구)중구장학회 / (서구)부산서구장학회 / (영도구)행복영도장학회 / (부산진구)부산진구장학회 / (동래구)동래장학회 / (북구)부산북구장학회 / (강서구)부산강서구장학회 / (수영구)수영구장학재단 / (사상구)부산사상구장학회 / (남구) 남구장학회 /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대구	광역 (10)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기초 (13)	(중구)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 (동구)동구교육발전장학회, 동구문화재단 / (서구)서구장학회 / (북구)대구북구청소년회관 , 행복북구문화재단 / (수성구)수성문화재단,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달서구)달서인재육성재단, 달서문화재단 / (달성군)달성장학재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구 분		기관명
인천	광역 (9)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복지재단
	기초 (7)	(중구)중구월디장학회 / (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서구)서동이장학회 , 서구문화재단 / (동구)꿈드림장학회 / (연수구) 연수큰재장학재단 / (옹진군)옹진군장학재단
광주	광역 (16)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디자인센터,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복지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남도장학회, 광주전남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기초 (2)	(남구)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 (서구)광주서구장학재단
대전	광역 (11)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대전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효문화진흥원
	기초 (3)	(서구)서구인재육성장학재단 / (유성구)유성구행복누리재단 / (동구)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울산	광역 (7)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인재육성재단
	기초 (4)	(남구)고래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 (북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 (울주군)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세종	광역 (2)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경기	광역 (18)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복지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초 (88)	(수원시)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FC,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성남시)성남시장학회,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 / (의정부시)의정부시민장학회, 의정부예술의전당,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

구 분		기 관 명
경기	기초	(안양시)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 (부천시)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장학재단,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광명시)광명시인재육성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 (평택시)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애향장학회, 평택시국제교류재단 / (안산시)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문화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 (고양시)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청소년재단 / (과천시)과천시애향장학회,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과천축제 / (오산시)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시흥시)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 (군포시)군포사랑장학회,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왕시)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 (하남시)하남시민장학회,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 (용인시)용인시인재육성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 (파주시)파주시행복장학회 / (이천시)이천시민장학회,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 (안성시)안성시민장학회, (김포시)김포시민장학회,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 (화성시)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광주시)광주시민장학회 / (양주시)양주시희망장학재단 / (포천시)포천시인재장학재단 / (여주시)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여주세종문화재단 / (양평군)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세미원 / (가평군)가평군복지재단 / (연천군)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강원	광역 (17)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인재육성재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도립극단,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강원도해양관광센터
	기초 (33)	(춘천시)춘천시문화재단,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춘천월드레저대회조직위원회, 봄내장학재단 / (원주시)원주문화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릉시)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문화재단 / (태백시)태백시복지재단, 태백시민향토장학회 / (삼척시)삼척향토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원덕읍향토장학회 / (홍천군)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횡성군)횡성인재육성장학회, 횡성문화재단 / (영월군)영월장학회,

구 분		기 관 명
강원	기초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영월군문화재단 / (평창군)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장학회(정선군)정선장학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철원군)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철원장학회 / (화천군)나라, 화천군인재육성재단 / (인제군)인제군문화재단 / (고성군)고성향토장학회 / (양양군)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 (동해시)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 (홍천군)홍천문화재단
충북	광역 (12)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충북여성재단, 충북테크노파크
	기초 (20)	(청주시)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복지재단, 상권활성화관리재단, / (충주시)충주중원문화재단, 충주시장학회,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 (제천시)제천시인재육성재단,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보은군)보은군민장학회 / (옥천군)옥천군장학회 / (영동군)영동군민장학회, 영동축제관광재단 / (증평군)증평군민장학회, 증평복지재단 / (괴산군)괴산군민장학회, (재)괴산군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 (음성군)음성장학회 / (단양군)단양장학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 (진천군)진천군장학회
충남	광역 (16)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 (28)	(천안시)천안사랑장학재단, 천안시축구단, 천안문화재단, 천안복지재단 / (공주시)공주시한마음장학회 / (보령시)만세보령장학회, 보령축제관광재단 / (아산시)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미래장학회 / (서산시)서산시복지재단, 서산인재육성재단 / (논산시)논산시장학회 /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 계룡시애향장학회 / (당진시)당진문화재단,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장학회 / (금산군)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 (부여군)부여군굿뜨래장학회, 백제고도문화재단, 부여상권활성화재단 / (청양군)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 (홍성군)홍성사랑장학회,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 (예산군)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예산사랑장학회 / (태안군)태안군사랑장학회
전북	광역 (14)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구 분		기 관 명
전북	기초 (31)	(전주시)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문화재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 (군산시)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 (익산시)익산문화재단, 익산사랑장학재단 / (정읍시)정읍시민장학재단 / (남원시)춘향장학재단,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 (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 / (완주군)완주군인재육성재단, 온고을로컬푸드, 완주문화재단 / (진안군)진안홍삼연구소, 진안사랑장학재단, 진안군의료원 / (무주군)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 (장수군)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 (임실군)임실군애향장학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임실치즈테마파크 / (순창군)순창군옥천장학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 (고창군)고창군장학재단,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 (부안군)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전남	광역 (19)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전남여성플라자,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전남복지재단,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초 (36)	(목포시)목포시의료원, 목포복지재단, 목포장학재단, 목포문화재단,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재단,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 (나주시)나주교육진흥재단,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 (광양시)백운장학회, 사랑나눔복지재단,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 (담양군)담양장학회, 담양군문화재단, 담양군복지재단 / (보성군)보성군장학재단 / (화순군)화순장학회 / (장흥군)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 (강진군)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문화관광재단 / (영암군)영암군문화재단, (재)영암군민장학회 / (무안군)무안군승달장학회 / (장성군)장성장학회 / (완도군)장보고장학회,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완도군행복복지재단 / (진도군)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신안군)신안장학재단, 신안군복지재단
경북	광역 (22)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행복재단,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장학회, 독도재단, 경북농민사관학교,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구 분		기 관 명
경북	기초 (36)	(포항시)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장학회, 포항문화재단 /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문화재단, 경주시장학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 (김천시)김천시인재양성재단 / (구미시)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장학재단 / (영주시)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영주문화관광재단 / (영천시)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영천시장학회 / (상주시)상주시장학회 /(문경시)문경시장학회 / (경산시)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산시장학회 / (청송군)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청송문화관광재단 / (영양군)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영양군영양축제관광재단 / (청도군)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성주군)성주군별고을장학회 / (칠곡군)호이장학회 / (예천군)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예천군민장학회 / (울진군)울진군의료원, 울진군장학재단 / (안동군)안동시장학회,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의성군)의성군장학회 / (영덕군)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경남	광역 (10)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상남도장학회
	기초 (30)	(창원시)창원문화재단,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시장학회 / (진주시)(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 (통영시)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 (사천시)사천문화재단,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 (김해시)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 (밀양시)밀양시민장학재단, 밀양시밀양문화재단 / (거제시)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 (양산시)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양산시복지재단 / (함안군)함안군장학재단 / (창녕군)창녕양파장류연구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 (고성군)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 (남해군)남해마늘연구소(재) / (하동군)하동군장학재단, 하동녹차연구소 / (거창군)거창군장학회, 거창화강석연구센터, 거창문화재단
제주	광역 (12)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별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대표 전화번호: **1588-1519**

기관명	관할구역	주 소	전자 팩스
서울지사	서울특별시의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050-3470-010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050-3470-0114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6층(범천동)	050-3470-0121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424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050-3470-0131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050-3470-0141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050-3470-0151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050-3470-020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44726)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050-3470-0211
경기지사	경기도의 경기동부지사, 경기북부지사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050-3470-0221

기관명	관할구역	주 소	전자 팩스
경기동부 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군,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	(136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050-3470-0206
경기북부 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050-3470-0231
강원지사	강원도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050-3470-0241
충북지사	충청북도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050-3470-0251
충남지사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82, 3층(신부동)	050-3470-0331
전북지사	전라북도	(5490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050-3470-0301
전남지사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050-3470-0341
경북지사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제외)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18, 7층(송정동)	050-3470-0351
경남지사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제외)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050-3470-0311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050-3470-0321

☞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신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2019년도 사업주 신고 안내서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 1588-1519)

인 쇄 (주)넥소 (T. 032-541-1623)